

	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 운영규칙		규정번호	5-0-12
			제정일자	2007.11.01
	개정일자	2012.04.30		
	개정번호	Ver.4 총페이지 2		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.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입학(설치학과, 모집인원, 전형계획 수립, 입학사정 및 전형관리 등)에 관한 사항
2.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
3. 전공심화과정 운영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
4. 기타 전공심화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, 외부위원이 1/2이상 포함되도록 한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이 하며, 부위원장은 교학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. 내부위원은 산학협력처장, 기획처장 및 교무부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전임교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, 외부위원은 산업체 임직원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6조(회의 및 의결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④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7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8조(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편성위원회) ① 전공심화과정 모집학과에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편성 및 개정을 위한 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편성위원회(이하 “편성위원회”라 한다)를

둔다.

② 편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공심화과정 운영 학과의 학부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학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과 교수 및 관련 산업체 임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구성인원은 산업체 임직원의 구성비를 1/2 이상으로 한다.

③ 편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9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세부 운영사항) 이 규칙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